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판 및 수사단계에서의 원격 영상통역 법적근거 마련 >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79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6. 26.
3. 회 부 일: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등 국어사용이 어려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재판이나 수사를 함에 있어서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는 통역인이 부족하거나 소수 언어 통역인이 없는 등의 이유로 양질의 통역이 적시에 제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거리나 소수 언어 등의 사정으로 적정 통역인이 법원이나 검찰청·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 장치를 이용하여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증언을 통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통역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81조의2 및 제221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통역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공판단계 및 수사단계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통역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1조의2 및 제22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81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통역) ① 법원은 통역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통역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역은 통역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통역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역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 ② (생략)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생 략)	③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역인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통역하게 할 수 있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

재판예규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제16조¹⁾에 따르면 각급법원은 매년 각 관할지역의 사정, 사건의 유형,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1개 또는 수 개의 외국어 통역인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작성하고 있음.

이에 따른 각급 법원의 언어별 통역인 후보자 인원수를 보면, 영어·중국어 등의 경우 통역·번역인이 각급 법원에 선정되어 있는 반면, 인도어·힌두어 등 소수언어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의 법원에만 통역인 후보자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1)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제16조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① 각급법원은 매년 1월말까지 각 관할지역의 사정, 사건의 유형,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통역·번역인을 지정할 필요가 많으리라고 예상되는 1개 또는 수 개의 외국어 및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수어에 관하여 2인 이상의 통역·번역인 후보자를 미리 선정하여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후보자로부터 경력카드 [전산양식 B2610]를 제출받아, 그 명단과 경력카드를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법정통역센터장은 통역센터의 통역·번역인 후보자로부터 경력카드 [전산양식 B2610-1]를 제출받아, 그 명단과 경력카드를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법원행정처장은 통역·번역인 후보자 경력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 통역·번역인 지정을 위한 자료로 제공한다.

이와 같이 소수언어의 경우 법원에 의하여 선정된 통역인 후보자가 적어 법정용어와 공판 진행절차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적합한 통역인을 찾기 어렵고, 적합한 통역인이 있더라도 법정과 멀거나 교통이 불편하여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적절한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소수언어를 사용하는 피고인은 공판 진행 시, 공판 진행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워 방어권의 실효적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등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할 우려가 클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안은 통역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통역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정용어와 공판절차 등을 이해하고 있는 통역인의 통역서비스가 해당 법원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법지원 서비스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인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됨.

첫째, 피고인이 공판절차에서 통역을 통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적법절차의 이념을 실현하는 등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

둘째, 이미 민사소송의 경우 원격 영상방식을 통한 증인신문·감정인신문·통역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바 있음.²⁾

또한, 수사단계에서의 원격 영상통역 도입도 법정 원격 영상통역 도입과 동일한 이유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됨.

개정안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사법지원 서비스체계를 개선 및 소수언어를 사용하는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적법절차의 이념을 실현하는 등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원격 영상통역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있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63

2)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1.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2.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39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1.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감정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정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43조(통역) ①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통역인에게는 이 법의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자료】 전국 법원별 통역인 후보자 현황(인원수) 및 지원 가능 언어

법원	통역인 후보자 인원수	지원 가능 언어	
		목록	개수
법정통역센터	5명	러시아어, 베트남어, 수화, 영어, 중국어	5개
대법원	201명	네팔어,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불란서어, 서반아어, 수화, 스리랑카어, 아랍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일어, 중국어, 태국어, 터키어, 파키스탄어, 포르투갈어, 필리핀어	23개
서울고등법원	40명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란서어, 서반아어, 수화, 스리랑카어, 영어, 일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13개
대전고등법원	137명	독일어, 러시아어, 말레이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불란서어, 서반아어, 수화, 스리랑카어, 아랍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일어, 중국어, 태국어, 터키어, 파키스탄어	20개
대구고등법원	163명	나이지리아어, 네팔어, 독일어, 러시아어, 말레이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불란서어, 서반아어, 수화, 스리랑카어, 아랍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일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터키어, 파키스탄어, 필리핀어	23개
부산고등법원	152명	독일어, 러시아어, 말레이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불란서어, 서반아어, 수화, 스리랑카어, 아랍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일어, 중국어, 카자흐스탄어, 캄보디아어, 키르기즈어, 태국어, 터키어, 파키스탄어, 필리핀어	24개
광주고등법원	31명	네팔어, 독일어, 러시아어, 말레이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불란서어, 수화, 아랍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일어, 중국어, 타밀어, 태국어, 터키어, 파키스탄어	20개
수원고등법원	379명	네팔어, 독일어, 러시아어, 말레이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불란서어, 서반아어, 수화, 스리랑카어, 아랍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일어, 중국어, 카자흐스탄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터키어, 파키스탄어, 필리핀어	24개

서울중앙지방법원	403명	독일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말레이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불란서어, 서반아어, 수화, 스리랑카어, 아랍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일어, 중국어, 카자흐스탄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터키어, 파키스탄어, 필리핀어	24개
서울남부지방법원	70명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불란서어, 서반아어, 수화, 스리랑카어, 아랍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일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터키어	17개
서울동부지방법원	79명	러시아어, 말레이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불란서어, 수화, 스리랑카어,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터키어	19개
서울북부지방법원	64명	독일어, 러시아어, 말레이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수화, 스리랑카어, 아랍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일어, 중국어, 태국어, 터키어	16개
서울서부지방법원	105명	독일어, 러시아어, 말레이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불란서어, 서반아어, 수화, 아랍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일어, 중국어, 카자흐스탄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터키어	20개
서울행정법원	571명	네팔어, 독일어, 러시아어, 말라얄람어, 말레이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불란서어, 서반아어, 수화, 스리랑카어, 스와힐리어, 아랍어, 암할릭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울루프어, 이란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어, 중국어, 카자흐스탄어, 캄보디아어, 키르키즈어, 타밀어, 태국어, 터키어, 트위어, 파키스탄어, 포르투갈어, 필리핀어, 힌디어	35개
서울가정법원	345명	독일어, 러시아어, 말레이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불란서어, 서반아어, 수화, 아랍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일어, 중국어, 카자흐스탄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터키어, 파키스탄어, 필리핀어	22개
특허법원	12명	독일어, 수화, 영어, 일어, 중국어	5개
의정부지방법원	58명	독일어, 몽골어, 말레이시아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불란서어, 수화, 스리랑카어, 아랍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일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터키어	18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1명	독일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일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터키어	10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6명	미얀마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일어, 중국어, 태국어, 터키어	9개

인천지방법원	92명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불란서어, 서반아어, 수화, 스리랑카어, 아랍어, 아프가니스탄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인도어, 일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터키어, 파키스탄어, 포르투갈어, 필리핀어	24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55명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란서어, 수화, 스리랑카어, 아랍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이란어, 인도네시아어, 일어, 중국어, 태국어, 터키어,	15개
인천가정법원	92명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말레이시아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불란서어, 서반아어, 수화, 스리랑카어, 아랍어, 아프가니스탄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인도어, 일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터키어, 파키스탄어, 포르투갈어, 필리핀어	25개
수원지방법원	167명	네팔어,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불란서어, 서반아어, 수화, 스리랑카어, 아랍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일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터키어, 필리핀어	21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48명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불란서어, 수화, 스리랑카어, 아랍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일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터키어	16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1명	네팔어, 몽골어, 베트남어, 수화, 중국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7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128명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불란서어, 서반아어, 아랍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타밀어, 태국어, 파키스탄어	16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7명	러시아어, 미얀마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	5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84명	네팔어,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불란서어, 스리랑카어, 아랍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일어, 중국어, 태국어, 터키어	16개
수원가정법원	65명	독일어, 러시아어, 말레이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불란서어, 서반아어, 아랍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일어, 중국어, 카자흐스탄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터키어, 파키스탄어, 필리핀어	20개
춘천지방법원	84명	독일어, 러시아어, 말레이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서반아어, 수화,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터키어, 파키스탄어	16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7명	베트남어, 서반아어, 수화, 일본어, 중국어, 필리핀어	6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0명	러시아어, 베트남어, 수화, 일어, 중국어	5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8명	러시아어, 베트남어, 수화, 영어, 일어, 중국어, 태국어, 필리핀어	8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4명	네팔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수화, 영어, 일어, 중국어, 태국어	8개
대전지방법원	137명	독일어, 러시아어, 말레이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 글라데시어, 베트남어, 불란서어, 서반아어, 수화, 스리 랑카어, 아랍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일어, 중국어, 태국어, 터키어, 파키스탄어	20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1명	수화, 영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중국어	5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3명	영어, 일어, 수화, 우즈베키스탄어, 중국어, 베트남어, 독일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9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6명	수화,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4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명	네팔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수화, 영어, 우즈 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11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명	중국어, 수화	2개
대전가정법원	137명	독일어, 러시아어, 말레이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 글라데시어, 베트남어, 불란서어, 서반아어, 수화, 스리 랑카어, 아랍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일어, 중국어, 태국어, 터키어, 파키스탄어,	20개
청주지방법원	24명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수화, 스리랑카어, 영어, 일어, 중국어, 태국어	9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명	베트남어, 중국어	2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5명	베트남어, 수화, 영어, 중국어	4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37명	독일어, 러시아어, 말레이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아 랍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어, 중국어, 태국어, 파키 스탄어	12개
대구지방법원	212명	나이지리아어, 독일어, 러시아어, 말레이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불란서어, 서반아어, 수화, 스리랑카어, 아랍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 네시아어, 일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터키어, 파키스탄어, 필리핀어	23개
부산지방법원	228명	나이지리아어, 네팔어, 독일어, 러시아어, 말레이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불란서어, 서반아어, 수화, 스리랑카어, 아랍어, 영어, 우즈베키스 탄어, 인도네시아어, 일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터키어, 파키스탄어, 필리핀어	24개

울산지방법원	40명	나이지리아어,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불란서어, 수화, 스리랑카어, 스페인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일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파키스탄어, 편잡어, 힌디어	20개
울산가정법원	34명	나이지리아어,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란서어, 수화, 스리랑카어, 영어, 일어, 중국어, 파키스탄어, 필리핀어	13개
창원지방법원	71명	나이지리아어, 네팔어,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불란서어, 수화, 스리랑카어, 아랍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인도어, 일어, 중국어, 카자흐스탄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터키어, 파키스탄어, 필리핀어	23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3명	러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3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5명	네팔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일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9개
광주지방법원	119명	네팔어,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불란서어, 수화, 스리랑카어, 아랍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일어, 중국어, 카자흐어, 캄보디아어, 키르기즈어, 태국어, 터키어, 파키스탄어	22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7명	러시아어, 베트남어, 수화,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7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5명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수화,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일어, 중국어, 태국어	9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59명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불란서어, 수화, 스리랑카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일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파키스탄어	16개
광주가정법원	128명	독일어, 러시아어, 말레이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불란서어, 수화, 아랍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일어, 중국어, 태국어, 터키어, 파키스탄어, 필리핀어	19개
전주지방법원	106명	독일어, 러시아어, 말레이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불란서어, 수화, 아랍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일어, 중국어, 태국어, 터키어, 파키스탄어	18개
제주지방법원	28명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란서어, 서반아어, 수화,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어, 중국어, 태국어	12개